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항만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을 합리화하고, 현재 지침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는 검색인력이 보안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과 항만시설 보안책임자·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 합리화 (안 제30조 개정)

- 1) 항만시설 보안수준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시설·장비·인력 변경은 항만 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나. 항만보안 교육·훈련 제도 정비 (안 제50조제8항 신설)

- 1)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는 검색인력에 대해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보안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안 별지 제16호서식, 제23호의2서식 개정)

- 1) 현행 항만시설보안책임자·내부보안심사자 지정(변경지정)통보서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표기토록 서식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민원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 예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때”를 “때(경비·검색인력의 교체, 보안시설·장비의 유지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항만시설소유자는 제6항·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수행하는 검색인력에 대해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변경지정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항만시설 소유자	항만시설의 명칭(상호)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팩스번호	
	주소			홈페이지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업무대행자 (보안담당자)
대상 항만시설	부서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직위	생년월일	팩스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변경내용 및 자격요건 확인

현행	성명		직위(직급)		지정일자	
변경	성명		직위(직급)		지정일자	
	자격요건		경력요건		적격여부	
			전문지식요건		적격여부	

< 비 고 >

- 경력요건: 항만시설 운영에 종사한 경력 또는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전문지식요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됨)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첨부가 가능합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변경지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통보인 제출서류	1.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항만시설소유자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직 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내부보안심사자

대상 항만시설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 위	생년월일	팩스번호	전자우편

내부보안심사자 변경내용 및 자격요건 확인

현행	성명		직위(직급)		지정일자	
변경	성명		직위(직급)		지정일자	
	자격요건		경력요건		적격여부	
			전문지식요건		적격여부	
			이해관계 여부		적격 또는 사유	

< 비고 >

1.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준용한다.
2.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변경지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 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 한다. 1. · 2. (생 략) 3.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인 력 및 보안시설·장비를 변경하 는 때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 한 변경)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때(경비·검색인력의 교체, 보안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는 제외 한다)</u>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 ⑦ (생 략) <u><신 설></u>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항만시설소유자는 제6항·제7 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수행하는 검색인력에 대해 법 제4 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u>